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39
----------	-----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 안 이 유

매립에 의존하던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시설이 금고동매립장에 조성됨에 따라

건축폐기물의 중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비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최종처리하기 전에 압축, 파쇄, 소각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중간처리비 산출방식은 투자비용 ÷ 처리량에 5%의 이윤을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비용에 포함될 내용과 처리량 산정 내력을 정함(안 별표1)

3. 참 고 자 료

□ 폐기물 관리법

제5조(일반폐기물광역관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 (일반폐기물처리업)①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일반 폐기물 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 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 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③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별표1의 산출기초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처리비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위탁수수료산출기초

구분	대상	단위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사배 업출 장자		원/톤	◇수집·운반비 징수요금 ·수집·운반비+ { 수집·운반비×5%(이윤) } ※수집·운반비 산출내역 폐기물수집·운반에 소요된 비용÷폐기물 운반량	◇중간처리비 산출방식 ○ (투자비용÷처리량)+5% (이윤) ○ 투자비용 내역 · 시설용지확보비(단, 토지매입에 따른 이자, 임대료에 한함) · 기반시설 공사비 · 경상비용 · 기타비용 ○ 처리량 산정시 적용 기준 · 시설처리능력의 60% · 1일 8시간 · 년 270일 ○ 5년간 장기 고정반입료 산정방식에 의함	◇매립장 반입요금 · 반입비+ { 반입비×40% (사후관리30%, 영향지역 지원금 10%) } ※ 반입비 산출 내역 총투자비용 ÷ 폐기물 총반입량

단 시장이 조성한 중간처리시설 이용시는 5%의 이윤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시장에 조성하지 아니한 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운반거리,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요금을 결정 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p> <p>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 이상의 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p> <p>①-----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u>별표1의 산출기초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별 표 1]					[별 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위탁수수료산출기초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위탁수수료산출기초				
구 대 분 상	단 위	수 집·운 반비	중 간 처 리 비	최 종 처 리 비	구 대 분 상	단 위	수 집·운 반비	중 간 처 리 비	최 종 처 리 비
사 배 업 출 장 자	원/톤	○수집·운반비 징수요금 수집·운반비+ {수집·운반비 ×5%(이윤)} ※수집·운반비 산출내역 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된 비용÷폐기물 운반량	신설	○매립장반입요금 반입비×{반입비 ×40%(사후관리 30% 영향지역 지원금10%)} ※반입비 산출 내역 총투자내용 ÷폐기물총반입량	사 배 업 출 장 자	원/톤	-----	○ 산출방식 · (총투자비용÷처리량) +5%(이윤) · 총투자비용 내역 -시설용지 확보비용 -기반시설 공사비용 -경상비용 -기타비용 · 처리량산정시 적용기준 -시설처리능력의 60% -1일 8시 -년 270일 · 5년간 장기고정 반입 료 산정방식에 의함	-----
<p>단, 시장이 조성하지 아니한 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운반거리,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요금을 결정 할 수 있다</p>					<p>단, 시장이 조성한 중간처리시설 이용시는 5%의 이윤을 징수 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조성하지 아니한 처리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운반거리,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요금을 결정 할 수 있다.</p>				